



보도시점 2023. 7. 27.(목) 14:00 배포 2023. 7. 27.(목) 10:00

## 조세심판원, '23년 2/4분기 주요 심판결정 공개

- 국민의 경제활동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요 심판결정 3건을 선정
- [조심 2022전5362] 정부출연기관인 청구법인은 A국에 원자로 설계용역 및 관련 교육훈련용역을 제공하였는바, 이는 용역의 수출(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임
- [조심 2022서7132]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를 미루어 오다가 부과제척 기한 임박을 이유로 과세예고통지와 동시에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침해하여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위법함
- [조심 2022지851] 청구법인은 물적분할로 설립된 법인으로, 분할 전 법인이 토지 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그 지상에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한 상태에서, 청구법인이 위 토지를 취득한 경우, 해당 토지는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여 취득세 감면대상임

□ 조세심판원(원장 : 황정훈)은 '23년 2/4분기 조세심판사건 중 국민의 경제활동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3건의 심판결정을 선정하였다.

○ 이번 심판결정 공개를 통해 납세자의 세금 신고·납부와 관련 경제생활 등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 '23년 2/4분기 주요 심판결정 사례

① 조심 2022전5362, 2023.6.1.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호는 사업자가 행하는 용역의 공급을 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 나목은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인적용역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제38조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7호는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정부출연기관인 청구법인은 2015년 9월 A국과 원자로 건설 前 설계 협약(이하 “쟁점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해 12월부터 3년여간 이에 따른 사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한 후, 쟁점사업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처분청은, 쟁점사업이 공동연구개발사업에 불과할 뿐 애당초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거나 용역의 공급으로 보더라도 이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학술연구용역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 심판부는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은 점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쟁점사업은 공동연구개발로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학술연구용역 등이 아니며, 청구법인이 A국에 원자로 설계용역 및 관련 교육훈련용역을 제공한 용역의 수출(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 우선, 공동연구개발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① 쟁점사업의 업무분장(공정표)상 단계별 업무수행자에 A국 관계자는 나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담당공정에 A국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이 있는 점, ② 청구법인의 인력은 191명 중 152명(79.6%)이 박사급인데 반해, A국 인력은 44명 중 1명(2.3%)에 불과하여 A국의 경우 원자력 공학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쟁점사업에서 생산된 약 9,000여건의 설계문서/도면 중 A국 연구원들이 생산에 참여한 서류는 약 200건(2.2%)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양측 간 공동연구개발 자체의 성립이 불가능해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 다음으로, 학술연구용역 등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① 청구법인은 이미 2012년 7월에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원자로에 대한 표준설계인가를 획득하였고, 쟁점사업과 관련 매입계약의 주요 구성내역을 보면 그 대부분이 청구법인의 인건비와 원전 전문기업들에 대한 설계용역비로 지출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② 청구법인이 제출한 보고서 등에 비추어 이 건은 청구법인이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의 개발을 위해 연구용역을 제공하였다기보다는, 청구법인이 이미 개발하여 보유한 기술을 A국에 이전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학술연구용역 등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② 조심 2022서7132, 2023.4.10. (인용)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은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같은 조 제3항은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본문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는 국세 중 신고세목의 경우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을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 날로 규정하고 있다(예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한편,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은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31일로 규정하고 있다.
- 청구인은 2016년 12월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2017년 2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하였다.
- 처분청은 2017년 4월경 이 건 양도소득세에 관한 과세자료가 생성되었음에도 이를 처리하지 않고 있다가, 2022.4.22.에 이르러서야 청구인이 1세대 2주택자로 추가 과세가 필요하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서와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송달하였다.
- 심판부는 ‘과세예고통지와 동일 일자에 양도소득세를 고지하여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사실상 박탈한 것에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직권으로 심리한 결과, 처분청이 실제 고지가 지연된 것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침해한 것이고, 따라서 이 건 처분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그 부과하는 자체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③ 조심 2022지851, 2023.5.8. (인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본문 및 제2호 가목은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산업단지 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법」 제530조의10은 단순분할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청구법인의 모회사는 2019년 4월 쟁점토지 매수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고, 2020년 1월 쟁점토지에 공장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 청구법인은 2020년 4월 단순 물적분할의 방식으로 모회사로부터 분할되어 설립되었고, 모회사로부터 승계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함에 따라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을 모회사에서 청구법인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해 5월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쟁점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 청구법인은 이후 쟁점토지가 산업단지 내 분양토지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등을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공장용 건축물이 이미 건축되어 있는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심판부는 이에 대해 청구법인이 2020년 4월 쟁점토지 매매계약을 체결 하였으나, ① 이는 모회사의 2019년 4월 매매계약을 해제한 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상법」 제530조의10에 따라 모회사의 매매 계약상 매수인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 당사자 명의만 변경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② 실제 쟁점토지 등기 사항증명서에 따르더라도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원인은 2019년

4월자 매매계약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게 된 원인은 2019년 4월자 매매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 건 경위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은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 상기와 같은 ‘23년 2/4분기 주요 결정의 요약내용은 붙임과 같으며, 그 전문(全文) 등은 조세심판원 홈페이지([www.tt.go.kr](http://www.tt.go.kr) “심판결정례 - 주요 심판결정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이외의 다른 일반 조세심판 결정 내용(전문)도 위 홈페이지([“심판결정례 - 통합검색”](#))에서 검색 및 확인이 가능하다.

※ (붙임) '23년 2/4분기 주요 결정 요약

담당 부서	조세심판원 행정실	책임자	행정실장	곽상민 (044-200-1720)
		담당자	사무관	주강석 (044-200-1731)



■ 조심 2022전5362, 2023.6.1.

- (제 목) 쟁점사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개발사업인지 아니면 과세대상인 AAA에 대한 용역의 공급인지 여부 등
- (사실관계) 2015년 3월 BBB와 AAA간 OOO 파트너십 구축 및 공동 OOO 인력양성 및 학술연구로 구성된 OOO협력프로그램을 위한 양해각서(MOU)가 체결됨에 따라 2015.9.2. 양해각서의 1단계로 청구법인과 AAA은 OOO협약을 체결하여 OOO에 OOO를 건설하기로 하였으며, 2015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쟁점사업을 수행하였다.
- (처분개요) 처분청은 쟁점사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공동연구개발사업에 해당함에도 청구법인이 용역을 제공하고 외화를 획득한 과세사업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영세율 매출 합계 OOO원을 감액하고 공제받은 관련 매입세액 합계 OOO원을 불공제하도록 하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2021.7.7., 2021.12.6., 2021.12.7. 청구법인에게 2016년 제1기~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심판결정) 처분청이 2021.7.7., 2021.12.6., 2021.12.7. 청구법인에게 <별지>의 기재와 같이 한 2016년 제1기~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판단이유) 청구법인이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의 연구용역을 제공하였다기 보다는 청구법인이 이미 개발한 기술을 AAA에 이전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은 것에 불과해 보이므로 쟁점사업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쟁점협약 상 청구법인과 AAA이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고, 사업비 일부를 한국에서 부담한 것 등은 OOO시장의 관행과 외교적인 고려 때문이었다는 청구주장이 일리가 있어 보이는 점,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그 수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3자가 이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그 대가관계를 얼마든지 인정할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사업 협약서의 비밀유지 조항으로 국회의원실의 자료요청 답변도 거부하는 등 고의로 쟁점사업의 협약서 등을 처분청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이 경정청구 당시 제출한 내용은 세무조사 시 파악한 사실관계와 달라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은 청구법인이 OOO에 OOO를 건설하기 전 설계용역과 관련 교육훈련용역을 AAA에 제공한 용역의 수출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공동연구개발사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등 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자세한 내용은 결정서 [전문\(클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심** 2022서7132, 2023.4.10.

(제 목) 부과제척기간 임박하여 과세예고통지와 동일 일자에 고지한 처분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 심리자료에 의하면, 2017.4.11.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자료가 생성되었고, 과세예고통지서는 2022.4.22. 이 건 고지서와 같이 송달된 것으로 나타난다.

(처분개요) 청구인은 2011.2.18.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2016.12.20. AAA에게 양도한 후 2017.2.28. 그 양도가액을 000원, 취득가액을 000원으로 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하였고, 처분청은 과세자료 생성된 이 건 양도소득세 자료처리 결과,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000를 소유한 것을 확인하여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2022.4.22.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심판결정)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판단이유) 처분청은 2017년 4월에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자료가 생성(수보)된 후 청구인에 대한 과세자료와 관련한 소명요구나 추가 조사 없이 이를 장기간(약 5년)동안 처리하지 아니하다가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한 2022.4.22.에 이 건 양도소득세 납부고지서와 과세예고통지서를 동일 일자에 송달하였는데, 이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처분청에 문의한바, 과세를 지연한 것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고 이는 처분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로 하여금 사전적인 권리구제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보여(처분청은 동일 일자에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하나,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보여 사실상 과세처분 이전에 과세예고 통지를 누락한 경우로 보임) 이 건 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자세한 내용은 결정서 [전문\(클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심 2022지851, 2023.5.8.**

(제 목) 분할전 법인이 토지상에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한 후 분할신설법인이 그 토지를 취득한 경우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 분할전 법인은 2019.4.2. 매도법인이 조성 중인 산업단지 중 공장용지 (이하 "쟁점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후 2019.8.27. 산업용건축물 신축을 위한 착공을 하였고 2020.1.16. 준공하여 산업용 건축물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감면받음.

이후 분할전 법인은 2020.4.8. 물적분할로 청구법인을 설립하였고, 청구 법인은 2020.4.13. 분할전 법인으로부터 쟁점토지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 받아 2020.5.26. 쟁점토지의 잔금을 지급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21.12.27. 쟁점토지는 산업단지 분양토지로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로 지특법 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 및 도세 감면 조례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이므로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1.11.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음.

(심판결정)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판단이유)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사 분할의 경우 분할회사의 권리의무는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분할계획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할 것(조심 2021지421, 2021.10.25.)으로 분할 전 법인은 분할계획서 상 쟁점토지와 이 건 공장을 포함한 승계사업을 분할 목적 사업으로 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하였고, 이에 따라 분할 전 법인은 2020.4.13. 쟁점토지 매매계약상 매수인의 지위를 청구법인에게 그대로 이전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이 건 공장이 신축된 이후인 2020.5.26. 쟁점토지를 취득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분할 전 법인의 매매계약상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한 청구법인은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 자세한 내용은 결정서 [전문\(클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